

제 12회 목포시의회 회의록

1. 일 시 : 단기4286(1953)년 1월 8일 오전 11시
2. 장 소 : 의회 의사당
3. 개의성립:
 - 1) 참석의원 : 18명
유정두, 이소규, 이복주, 명남철, 김삼성, 김남진, 진복춘, 임일남, 김경현,
김팔용, 이문길, 정응표, 김경희, 박찬규, 김채용, 김자홍, 오세일, 김영완
 - 2) 불참의원 : 4명
이재홍, 문택호, 김길환 의원
 - 3) 참석한 자치단체의 직원
하동현 시장, 박구화 시정계장, 양희경 공보계장
4. 의사일정표:
 - 1) 개 회 식
5. 보고사항:
 - 1) 제11회 임시회의 제 2, 3차 회의록
 - 2) 용당도선장 진상조사의 건
 - 3) 청과물 도매시장 허가취소 경과의건
6. 부의안건:
 - 1) 단기4285(1952)년도 목포시 동정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개정 예산의 건
 - 2) 목포시 동세조례 개정의 건
 - 3) 목포시 동서기 정원조례 개정의 건
 - 4) 목포시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제정의 건
7. 개회선언

의장

(오전 11시)

8. 개 회 식:

- 1) 개 회 사 : 조운용 간사
- 2) 국민의례
- 3) 의장인사
- 4) 폐 회 식 : 조운용 간사

9. 보고사항:

◇서기 박 찬 대

- 제11회 임시의회 제2차 회의록 낭독

◇의장 유 정 두

- 방금 낭독한 회의록에 이의없으면 수리하겠음

◇간사 조 운 용

- 제11회 임시의회 제3차 회의록 낭독

◇의장 유 정 두

- 방금 낭독한 회의록에 이의없으면 수리하겠음

◎ 용당 도선장 진상조사 결과 보고의 건

◇김 남 진 의원

- 조사 기간중 실지 현장을 답사하였던 바 사선이 무려 15척 가량이 있어 시수입에 막대한 손해를 주고 있다. 서장으로부터 사선을 철저히 단속하라는 전화와 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상계에서는 이를 실행하지 않고 있으며 직원들은 2, 3척의 사선을 가지고 있는 현실이므로 수상서에다가 매 월 어느정도 가량 보조해줌으로써 밀선을 철저히 취체케 하여 시수입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과 서측과 번영회로 넘겨줄 것을 주장한다는 내용의 보고가 있었음 (속기록 참조)

◇이 소 규 의원

- 간접적으로 들어 본다면 서에서는 몇할 정도를 주라는 요구가 있는 모양인데 사실 그러한가? 김팔용 의원께서 말씀해 주기 바람

◇김 팔 용 의원

- 지난번 서경리주임을 만났는데 웃으면서 1개월에 500만 정도를 달라고 한 일은 있으나 이것은 정식으로 한 말이 아니다.

◇이 문 길 의원

- 경찰서에서 얼마 주라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전반 시장이 있을 때 말이 있었기 때문에 말을 한 것인데 서로서는 단돈 10원이라도 보조 해 준다면 감사하겠다는 말이 있었다.

◇이 채 용 의원

- 도선장 운영에 관하여는 시재정상 지장이 없는 한 번영회에서 하나 경찰서에서 운영하거나 상관없다고 생각되오나 목포시에 번영회가 발족된지는 오래이지만은 재정상 아직 커다란 역할을 못한 것이 사실이며, 시발전상 번영회가 없어서는 안될 것이므로 시의 재정 수입상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번영회에 일임할 것을 김팔용 의원의 동의에 첨가

◇김 남 진 의원

- 선박이 사고발생 할때는 시에서 책임질 것인걸 번영회가 책임질 것인가?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다.

◇시장 하 동 현

- 번영회에 이양한다는 것은 관리권을 주는 것이 아니고, 대표권을 번영회에 일임하게 되더라도 양자간 타협하여야 할 것이며, 시에서는 일정한 예산이 있는데 그 예산의 수입이 부족하면 일임할 수 없으며, 사고발생시 책임에 있어서는 계약체결 여하에 따라 결정되겠음

◇김 영 완 의원

- 도선장 운영 관계는 번영회에 일임해서 우리 의원과 타협하여 추진하도록 할 것이며, 추진 위원에는 유정두, 이소규, 김남진 의원으로 하면 좋겠다.

◇의장 유 정 두

- 현재의 시재정을 확보하면서 분배율에 대하여는 행정당국에 일임하는데 3자가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 복 주 의원

- 번영회에서 운영하더라도 밀선 취체하기는 대단히 곤란한 문제이며, 앞으로 취체를 하든지, 못하든지, 또는 1일당 70만원 수입하나, 40만원을 수입하나 여하한 방법을 하더라도 종전대로 60만원 정도의 시수입은 시장이 책임지고 번영회에 돌려 주도록 개의하다.

- 재청이 있었다.

◇김 남 진 의원

- 1년간을 통하여 12월이 가장 수입이 많은 달이라고 하는데 1일당 57만원 정도밖에 수입이 없다는 것을 참고로 말한다.

◇이 복 주 의원

- 수년간의 통계표를 조사하면 1일 평균 얼마나 수입된다는 것을 숫자적으로 알 수 있을 것이니 이 통계표에 의하여 환산하여 시에서는 수입토록 하자.

◇의장 유 정 두

- 개의안과 동의안이 나왔는데 개의안은 1년간의 통계표에 의하여 시수입을 정하자는 것과 3자가 합의하여 사선을 방지하고 분배율에 대하여는 행정당국에 일임하는데 그에 참석할 의원으로서는 유정두, 이소규, 김채용, 김남진 의원을 참석케 하자는 동의안이 있는데 가부를 묻겠음

◇이 복 주 의원

- 시장님께서서는 도선장 문제의 동의안에 의해서 번영회나 경찰서에다 일임

하게 되면 시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가? 명백한 답변을 바람

◇시장 하 동 현

- 시수입면에 있어서 지장이 있다면 계약을 취소할 것임

◇의장 유 정 두

- 개의안부터 가부를 묻겠음. 재석의원 18명 전원 가결
- 동의안의 가부를 묻겠음. 재석의원 18명 중 가 17, 기 1, 가결

◎ 청과물 도매시장 허가취득 경과보고의 건

◇ 유 정 두 의장

- 청과물 도매시장 허가취득에 있어서는 김영환 의원의 노력으로 작년 12월 16일부터 허가가 났는데 내용을 보면 금년 1월 15일로 하기로 되어 있으며, 1개월 이내에 실행할 계획임
- 시로서 어떠한 구체적인 복안이 없는가?

◇ 하 동 현 시장

- 도매시장 관계에 있어서는 약 2억원이라는 거액을 낼 수 없으므로 어느 단체가 모든 것을 준비하여 설치한다면 줄 용의가 있다.

◇ 유 정 두 의장

- 본 안 통과에 대하여 가부를 묻겠음. 재석의원 18명 중 전원 가결

◎ 목포시 동서기 정조조례 개정의 건

◎ 목포시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의 건

◇ 하 동 현 시장

- 별지 이유서에 의하여 증원의 필요성을 설명(속기록 참조)

◇진 복 태 의원

- 현 동사무 추진에 있어서는 사무능률이 불충분한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도 먹어야 하기 때문에 자연히 사무에 불충실 하므로 시에서 발령하여 동에다 배치하는데 부동장의 직위를 주어서 발령함이 좋겠다.

◇김 영 완 의원

-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는 법이니 부동장 제도는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정 응 표 의원

- 각 동에 성인교육 서기와 균경원호 관계 서기가 1명 내지 2명씩 있는데 이러한 직원을 유효적절하게 사용함이 어떠한가?

◇하 동 현 시장

- 이에 대하여는 내용을 조사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겠다.

◇임 일 남 의원

- 동직원 배치에 있어서 무안동과 산정동을 본다면 동사무의 차이가 심하다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시장님께서 잘 조사해 주기 바람

◇유 정 두 의장

- 동서기 증원하는데 대하여는 예산면에 비추어서 현재 시청직원을 기동 배치할 수 없는가?

◇하 동 현 시장

- 본청 직원으로서는 기동 배치하기 곤란하다.
- 그리고 각 동장들도 만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인원 증원해 달라고 요청한다.

◇유 정 두 의장

- 본 안건 통과에 대하여 가부를 묻겠음

- 재석의원 18명 전원가결

◎ 단기4285(1952)년도 목포시 동정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개정 예산안의 건

◇김 남 진 의원

- 요즈음 각동의 실정을 보면 각 동마다 2백만원 내지 5백만원을 유용 또는 적자를 내고 있으며, 개인적으로 쓴 것도 약 10만원 이상씩 유용하고 있는 형편이다. 연말까지 그대로 놔둔다면 어떠한 사고가 발생할지 우려가 되는데 시장님의 답변을 들어보자.

◇정 응 표 의원

- 이번 추가개정 예산안을 보면 사무비에 숙직료가 있는데 각 동에서는 숙직을 하지 않는 모양인데 숙직료를 지불하고 있는가? 또는 과거부터 징용이나 징병이나 가게 되면 동에서 경비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고 동민에게 각출하는 현실인데 본 안이 통과되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인가?

- 항목별로 말씀하여 주기 바람

◇박 구 화 시정계장

- 숙직료는 아직까지 지불한 바 없으며, 전례에 의해서 기산된 것과 국민반 강화비가 기산된 이유와 과거 징병, 징용시 다소간이나 신중 검토하기 위하여 내무분과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동의하다.

- 재청이 있었다.

◇진 복 태 의원

- 지금 동에서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것이니 이 자리에서 토의해 가지고 통과시킬 것을 개의회하다.

◇조 운 용 간사

- 작년의 동정세가 5할밖에 징수 못 되었으며 지금 이 예산은 1년간을 계산한 것이요, 또한 작년의 외상값을 지금까지 갚지 못한 것이 현실이며, 시국 대책비는 경찰서하고 토의한 것임

◇김 채 용 의원

- 앞으로 연도말까지 3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결국 이러한 예산을 세우게 된 것은 사후 승인에 불과하다고 생각되며,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통과시키려면 사전에 검토할 시간 여유를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통과시켜 달라는 것은 이해하기 곤란하니 시간을 두고 연구하기 위하여 내무분과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재청함

◇ 유 정 두 의장

- 동의안에 재청이 있으므로 내무위원회에 회부할 것인가 가부를 묻겠음.
재석 18명중 가 17, 기 1(위원회 회부)

◇정 응 표 의원

- 신문보도에 요즈음 외국으로부터 비료 등이 부산, 인천, 여수 각 항구에 입항한 모양인데 우리 목포항에는 한 개도 없는 현실이니 시장님의 중앙 출장계획에 같이 참가하여 주기 바라며, 거반에도 운크라 원조 기관에서 각 항구 잔교시설 시찰차 목포에도 왔으나 해사국만 들른 모양이며, 목포의 잔교를 수리하려면 178억 6천만원의 돈이 필요하니 이런 점도 특히 유의해주시기 바람

◇김 남 진 의원

- 요즈음 판자집 철거를 거시적으로 단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두에 새로운 판자집을 2동이나 신축 하였는데 시에서 허가한 사실이 있는가?

◇ 하 동 현 시장

- 시당국에서는 허가한 일이 없음

◇ 유 정 두 의장

-회의록 서명에 김남진, 명남철 의원을 지명

9. 폐회선언

의장

(오후 2시 5분)

10. 폐 회 식

위 회의록을 확인하고 자에 서명 날인함

단기4286(1953)년 1월 8일

의장 : 유 정 두

의원 : 김 남 진

” : 명 남 철

작성자 서기 : 천 세 봉

제12회 목포시의회 속기록

◇의장 유 정 두

- 개의 선언하다.

(오전

11시)

- 우리가 오늘도 많은 토의를 하게 되는데 먼저 우리 헌법 제97조에 의하여 지방자치제가 단기4285(1952)년 2월 5일에 공포되어 그동안 많은 발전을 기하여 왔던 것입니다.

- 진작 실시될 것임에도 불행히 6.25사변을 당하였던 것입니다.

- 그리하여 많은 살상과 우리의 불행을 초래하였던 것입니다.

- 우리는 지방 발전을 위하여 또한 자치행정을 완수하는데 여기서 민주정치를 박차게 가해야 될 것입니다.

- 그러면 우리들은 모든 예산과 경제에 기인하여 우리 의회에 관한 사항이나 혹은 시발전상 재정에 관한 건 등을 해결못하는 예가 없다고도 볼 수 없는 현실이며, 이치하여서 발전의 실천에 옮겨갈 것인가가 염려됩니다.

- 또한 우리는 두 가지의 애로가 있는데, 적극적인 면과 소극적인 면인데 적극적인 면보다도 소극적인 면의 입지적 조건에서 시세입 뿐만 아니라 파손된 상태에 놓여 있는 항도 목포를 재건하는데 큰 도움이 되어 주기를 부탁하오며, 또한 우리들은 어느 때나 적극적인 면에서 활동을 하여야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것보다도 예를 들면 도나 중앙으로부터 원조나 예산을 타오는데 1억원을 가져오기 위하여 5천만원이 들고 또는 10억원을 가져오는데 5천만원의 여비가 필요하더라도 기계적으로 활동하는 것보다도 계획성이 있는 일을 해야 할 것이며, 금년도부터는 지방자치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어 주시기를 특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의회는 금년도에 들어가서 처음 소집되는 의회이고 주로 동정세 조례안건 등인데 신중히 토론하시어 통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그러면 제11회 회의록을 낭독하겠습니다.

◇서기 박 찬 대

- 제11회 제2차 회의록을 낭독함

◇의장 유 정 두

- 방금 낭독한 회의록에 이의없으면 통과하겠습니다.

- (이의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전원 통과함

◇간사 조 운 용

- 제11회 제3차 회의록을 낭독하였음 이의없이 전원 통과되었음.

◇서기 박 찬 대

- 회의순서에는 없습니다만 내무국장으로부터 시장, 군수에게 별지와 여한 통첩이 유하오니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 용당 도선장 진상조사 결과 보고의 건

◇김 남 진 의원

- 지난 의회에서 논의되어 진상조사를 하기 위하여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당초에 김팔용 의원과 현장에 갈 때에는 경찰서장에게 가서 먼저 타합하기를 사선을 절대적으로 책임지고 취체하기로 하였으나 실지 현장에 가본바 이러한 논의가 책상론에 불과하였습니다. 그것은 사선이 15척 가량이 있는데 이를 완전히 취체함으로써 1일당 몇배의 수입이 있는가도 조사 못하고 또한 상상도 못하였던 것입니다. 실지 나가서 보니까 서장님으로부터 사선의 밀항을 단속하라는 전화와 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선에서 근무하는 수상계에서는 이를 실행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내용을 알아 보아도 수상계 직원 각장 2, 3척의 밀선을 가지고 있는 현실이며, 이 배들이 하루 1회씩만 왕복한다고 하고 1회 2만원씩만 받더라도 1일 30만원이란 금액이 시수입에서 감소되는 실정이므로 이대로는 도저히 완전한 밀항을 취체할 수 없으며, 수상계에서 책임있는 취체를 하기 위하여서는 수상계 책임자에게 대책을 강구하게 하고 수상서에다가 1개월에 가령 100만원을 준다든가 하여서 밀항을 철저히 취체하여야만 시수입에 지장이 없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목적액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오늘 의회에서 신중히 검토와 토의를 하셔서 서측과 번영회측으로 시수입에 지장이 없는 한 번영회로 넘겨줄 것을 주장하며, 12월, 1개월간에 1,600만원이 수입되었는데 이는 1일 평균 7,800만원

의 수입이나 앞으로 사선을 철저히 없앴으로써 시수입에 증가가 있을 줄로 생각하고 오늘 다시 좋은 방안을 의회에서 검토할 것을 보고에 첨가하여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의장 유 정 두

- 지금 김남진 의원으로부터 용당 도선장 조사에 관하여 2주일간에 걸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사선을 취체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시수입에 만전을 기할 수 없으므로 시, 경찰서, 번영회가 3인 1체가 되어 도선장 관리권을 시에 두고 대표권을 번영회에 두고 한다든가, 사선을 철저히 취체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그대로 할 것인가 등 신중히 토론하여 주십시오.

◇김 남 진 의원

- 실지로 15일 동안에 걸쳐서 내용을 조사하였는데 명확한 수입액을 파악치도 못하고 목포시 발전을 위하여 그대로 묵과한다면 안될일이므로 3인 1체가 되어 합의가 된다면 번영회에 넘겨주고 번영회에 몇할을 준다는 것은 행정부에 일임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이 있음)

◇이 복 주 의원

시나 서가 완전히 합의되어 15일간을 실지 조사한 것 아닙니까?

◇의장 유 정 두

- 15일간을 조사하여 가지고 결과에 따라서 결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 소 규 의원

- 간접적으로 들어 보면 서에서 몇할 정도를 주라는 요구가 있는 모양인데 몇할을 주면 어찌할 것인가? 또는 몇할을 요구하고 있는가? 김팔용 의원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의장 유 정 두

- 2주일간에 걸쳐 실지 조사한 용당 도선장에 관하여서는 밀선을 취체하지 않고서는 시수입을 할 수 없으므로 시, 경찰서, 번영회 등 3인 1체가 되어 대표권을 이양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가 신중한 토론을 바랍니다.

◇김 남 진 의원

- 15일간의 실지 조사에도 확실한 내용을 파악치 못함을 묵과함은 유감이므로 3인 1체 합의하에 번영회에 주는데 몇할 준다는 것은 행정부에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 팔 용 의원

- 방금 김남진 의원의 의견과 동일합니다.
- 지난번에 서경리주임을 만나서 웃으면서 장난 비슷한 말씀으로 1개월에 5백만정도를 달라고 웃으면서 말씀한 일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장난에 불과한 말씀입니다.

◇이 소 규 의원

- 수상 파출소에서는 별도 수입이 없어서 대단히 곤란할 것입니다.
- 그런데 본서와 타합하여 본서에다가 얼마 정도만 주면 될 것인가? 또는 수상계 주임만 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직원까지도 주어야 할 것인가?
- 대단히 복잡한 문제라고 생각하여 동의를 결정되기 전에 명확한 결정을 할 것을 바랍니다.

◇의장 유 정 두

- 지금 대체적으로 보아서 배액이 붙는다고 생각합니다.
- 그래서 수상경찰서와 타합하여 거기다가 청원순경을 배치해 직접 배를 타고 다니면서 무임으로 승선한 여객을 조사하는 동시에 사선 등을 취체하도록 할 것인가? 그리하여 거기에 위반한 자를 발견하면 시장으로서 법적으로 고소할 수 있지만 번영회로 하여금 고소하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 응 표 의원

-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실지 조사의 성과를 본다면 탄판입니다. 서장으로서는 몇할의 요구도 없으며, 서장이 밀선을 취체하라는 지시가 있음에도 수상계에서는 하지 않고 있으며, 또 밀선이 출발하는 것을 보면 수상계 있는 데서 출발해 가지고 항

동과출소 있는대로 가면 아이들의 승객이 달려오는 현실이므로 지금 보고에 의하면 1일동안에 5, 60만의 수입이란 의심치 않을 수 없으므로 시로서는 시세입에 지장이 없는 한 몇할을 줄 수 있는가 알고 싶습니다.

◇이 문 길 의원

- 그런데 경찰서에서는 얼마 주라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전반 박재우 시장이 있을 때 말이 있었기로 말을 한 것인데, 서로서는 단돈 10원이라도 보조해 준다면 감사하겠다고 말하고 있는데 정응표 의원은 몇 백만원을 주라고 하느냐 하는데 서로서는 단 1전이라도 주면 감수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 그리고 내가 전반에 실지 현장을 가본 바 승객의 선임이 얼마된 지도 모르고 또는 무임으로 승선하였기로 당신은 누구이기에 무임으로 배를 타냐고 하였더니 군인이라고 하기에 원칙 군경은 반액이므로 반액을 지불하라고 한 즉, 나를 쳐다 보길래 당신이 나를 보면 무엇할테요 하고 언쟁까지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로는 대단히 곤란한 바 시, 경찰서, 번영회 등이 타협하여 합의해서 운영하기를 의회에서 가결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 채 용 의원

- 아까 도선장 문제를 가지고 상당한 논의가 있었던 모양인데 나는 과반 의회 때 참석치 못하여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으나 결국 도선장 운영에 관하여서는 시재정상 지장이 없는 한 번영회에서 하든지 경찰서에서 하든지 상관은 없다고 생각되지만 우리 목포시에 번영회가 발족된지 오래되어서 목포시 재정에 다소라도 도움이 되었다고 하나 그다지 커다란 역할을 못한 것은 사실이며, 또한 경찰서나 시도 번영회가 없어서는 안될 것이므로 시의 재정 수입상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번영회로부터 수입면을 확보하되, 운영권은 시장님에게 있고 일시 사무취급은 운영회에서 하여 재정상 수입에 만전을 기하도록 번영회에 일임할 것을 의원의 동의에 참가해서 말씀 드립니다. (동의요 하는 이 있음)

◇김 남 진 의원

- 선박의 사고 발생시에는 시가 책임이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번영회에 있는 것인가?
- 시장님의 의견을 묻습니다.

◇시장 하 동 현

- 번영회에 이관한다는 것은 관리권을 주는 것이 아니고 대표권을 번영회에 일임하게 되더라도 번영회와 타협하여 할 것이며, 또한 시에서는 일정한 예산이 있는데 그 예산의 수입이 부족하면 일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종전의 수입한도면 우리 시수입에 지장이 없으며, 이양할 용의를 가지고 있고, 사고 발생시 등은 계약 여하에 따라 체결될 것으로 믿습니다.

◇김 영 완 의원

- 어디까지나 시재정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며, 지장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잔교 등이 파괴되었는데 앞으로 이것도 전부 수리하여야 할 것인데 먼저 앞서는 것이 금전일 것입니다.

- 내가 출장중 여비 관계로 곤란을 받은 사실도 있지만 반드시 돈이란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도선장 관계는 번영회에 일임하여 우리 의회원과 타협하여 추진하도록 합시다.

- 그리고 번영회 추진위원회는 유정두, 이소규, 김채용, 김남진 의원을 추천합니다.

◇의장 유 정 두

- 현재의 시재정을 확보하는 동시에 분배율에 대하여서는 행정당국에 일임하는데 3인이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있음)

◇이 복 주 의원

- 먼저도 출장도중 삼호면을 실지로 본 바가 있었는데 번영회에서 운영하는데 밀선을 취재하기는 대단히 곤란한 문제이며, 앞으로 취재를 하여 가든지 여하한 방법으로 하든지 1일당 70만원이나 40만원이나 수입된다고 하더라도 또한 밀선을 취재 못하더라도 종전의 수입 60만원 정도는 시장님이 책임지고 수입하도록 하여 번영회에 돌려 주도록 개의합니다. (의원 개의에 동의합니다.)

◇김 남 진 의원

- 1년을 통하여 12월달이 가장 수입이 많은 달이라고 하는데 1일당 57만

정도 수입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의장 유 정 두

- 11월 중순부터 1월까지가 제일 좋은 시기라 합니다.
- 그때는 농촌에서 나락같은 것도 가져오고 하니 최적기라고 합니다.

◇이 복 주 의원

- 우리가 조사하는 14일 동안에 제일 수입이 적다는 말을 들었는데 수년간의 통계표를 조사하면 1일 평균 얼마나 수입된다는 것을 숫자적으로 알 수 있을 것이니 이 통계표에 의하여 환산하여 시에서는 수입토록 합시다.

◇의장 유 정 두

- 개의안과 동의안이 나왔는데 1년간의 통계표에 의하여 수입하자는 개의안과 3자가 합의하여 밀선을 방지하고 지불율에 대하여서는 행정당국에 일임하는데 거기에 유정두, 이소규, 김남진 의원 등을 참석케 하자는 동의안이 있는데 가부를 묻겠습니다.

◇이 복 주 의원

- 시장님께서서는 도선장 문제의 동의안에 의하여 3자가 합의한 끝에 번영회나 경찰서에 일임하게 되면 시수입을 확보할 수가 있는가, 없는가?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시장 하 동 현

- 시수입면에 있어서는 지장이 있다면 계약을 취소할 것입니다.

◇의장 유 정 두

- 그러면 개의안부터 가부를 묻겠습니다.
- 재석의원 18명 전부 기권으로 부결되었습니다.
- 그럼 동의안에 가부를 묻겠습니다.

- 재석의원 18명 중 가 17명, 기권 1명으로써 동의안이 가결 되었습니다.

◎ 청과물 도매시장에 관한 건

◇시장 하 동 현

- 청과물 도매시장 관계는 김영완 의원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작년 12월 16일부터 허가가 났는데 내용을 본다면 단기4286(1953)년 1월 15일로 하기로 되어 있는데 1개월 이내에 실행할 계획입니다.

◇의장 유 정 두

- 시로서는 어떠한 구체적인 복안이 없습니까?

◇시장 하 동 현

- 도매시장 관계에 있어서는 약 2억이라는 현금이 필요한데 시의 현재 형편으로는 2억이라는 돈을 낼 수 없으므로 어느 뚜렷한 단체가 모든 것을 준비하여 설치한다면 줄 용의가 있습니다.

◇의장 유 정 두

- 청과물 도매시장 문제는 우리 목포시 발전을 위하여, 또는 시의 재정을 위하여서는 보조가 많이 될 줄로 생각되온 바 우리 의회에서도 충분히 연구하고 토론하기 위하여 운영회를 만든다든가에 관해서는 우리끼리 비밀회의를 합시다.(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 시재정 처리 전말보고에 관한 건

◇간사 조 운 용

- 시청 소유인 세단을 중고로 위급하여 추력(트럭)과 교환의 계약이 체결되어 세단과 추력을 차액없이 교환하였다는 별지 내역서 지참인 보고가 있었습니다.

◎ 단기4285(1952)년도 목포시 동정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건

◇의장 유 정 두

- 목포시 동정세 조례 개정안을 심의하기 전에 행정부로서 추가경정의 설명을 듣기로 합시다.

◇시정계장 박 구 화

- 동정세 인상에 있어서는 지방세법 제23조를 본다면 호별세를 4월 1일과 10월 1일의 현재의 두 기간으로 나누어서 자력을 조사하여 정맥 6승과 백미 6승의 소매가격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인데 현재로 보아서는 지방세의 개정에 수반하여 부득이 인상하지 않으면 안될 형편입니다.

◇의장 유 정 두

- 제2조 1항에 대하여 이해키 곤란하오니 설명하여 주시오.

◇시장 하 동 현

- 독립생계를 하는 자로 인증된 자는 하숙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호별세를 부과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동정세가 원칙적으로 부과되게 됩니다.

◇정 응 표 의원

- 제2독회를 생략하고 제3독회로 들어갈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유 정 두

- 동의에 가부를 묻겠습니다. 전원 가결하였습니다.

◎ 목포시 동서기 정원조례 개정의 건

◇시장 하 동 현

- 동직원을 증원시켜 가지고 말단의 행정을 강화코자 동에 따라 1명, 2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 지금의 현실로는 도저히 사무가 밀려서 확실한 사무를 추진키 곤란함에 동에서 들어온 보고 등을 보면 주먹치기에 보고에 불과하여 일을 할 수 없으므로 앞으로는 강력히 사무를 추진시키고자 시에서 동으로 배치할 직원은 주로 사무적으로 유능한 직원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진 복 춘 의원

- 방금 하 시장님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 그러나 현 동사무 추진에 있어서 사무능률이 불충분한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도 먹어야 하기 때문에 자연히 사무능률이 떨어지므로 신규로 시에서 발령하여 동에다가 배치를 하되 부동장의 직위를 주어서 발령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결국에는 며칠 안가서 종전에 있던 동직원과 똑같은 입장으로 되어 버리니 부동장이라 하여 발령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 영 완 의원

- 방금 의원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동장 제도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정 응 표 의원

- 각 동에 성인교육 서기와 군경원호회 서기가 1명 내지 2명씩 있는데 이러한 직원들을 예산면에서 보아 유효적절하게 사용함이 어떠합니까?

◇시장 하 동 현

- 이것에 대하여서는 내용을 조사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임 일 남 의원

- 동직원의 증원에 대해서는 무안동과 산정동을 본다면 동사무의 차이가 심한데 시장님이 잘 조정하여 주십시오.

◇의장 유 정 두

- 동서기를 증원하는데 대하여는 예산면에 비추어서 현재 시청직원을 기동 배치할 수 없는가요? 말씀하여 주십시오.

◇시장 하 동 현

- 본청 직원으로서 동에다가 기동 배치는 곤란합니다. 그리고 각 동장들로부터 인원 증가하여 달라는 요구가 기회있을 때마다 요청 되면 바 여기에 대하여서는 좋은 방도를 강구하겠습니다.

◇의장 유 정 두

- 가부를 묻겠습니다.
- 재석의원 18명 전원 원안 가결

◎ 단기 4285(1952)년도 목포시 동정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건

◇김 남 진 의원

- 본 예산안을 심의하기 전에 예산면을 본다면 몇억이라는 예산이 서 있는데 요즈음 각 동회의 실정을 보면 1개 동에서 2백만원 내지 5백만원을 유용 또는 적자를 내고 있는데 앞으로도 연도말까지에는 동정에 대단히 곤란을 느낄 줄로 생각됩니다. 적어도 각 종목에서 개인적으로 쓰는 것이 약 10만씩 되고 부채의 종목이 30여종이 되는데 심지어 동장 등은 몇 10만씩 유용하고 있는 형편으로서 연도말까지 그대로 놔둔다면 어떠한 사고를 초래할 것 같으니 시장님의 좋은 답변을 듣기로 합니다.

◇정 응 표 의원

- 이번 추가경정안을 본다면 사무비에 가서 숙직료가 각 동마다 포함되어 있는데도 각 동에서는 숙직을 하지 않은 모양인데 숙직료를 지불하여 주는가? 또한 과거부터 징용이나 징병에 나가게 되면 동회에서 경비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고 동민에게 각출하여 주고 있는 형편인데 추가경정안이 통과 되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인가? 항목별로 말씀하여 주십시오.

◇시정계장 박 구 화

- 숙직료 지불 문제에 있어서는 아직 한 푼도 지불 못하고 있습니다.
- 실은 동에서 숙직을 하지 않는 것도 사실이고 하나, 추가경정 예산을 세울 때는 기전 예산을 기입함이 옳기에 기입한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반 강화조직에 있어서는 국가로부터의 요청과 또는 최후 말단의 기관을 강화하여 가지고 회의록이나 또는 거기에 부수된 비용 등을 합하여서 이러한 예산이

되었는데 원칙적으로 본다면 국민반에서도 매월 1일과 15일에 반장회의를 개최하고 회의록을 작성하고 동장회의는 매월 30일로서 정례회를 고정적으로 개최하게 되는데 앞으로는 예산만 선다면 그대로 실행할 계획이 온 바 현재에 있어서는 거기에 비용도 부족한 형편입니다.

- 또한 징용이나 징병이 나오게 되면 다소간의 민폐가 있는 모양이며, 공금 등으로 일시 동회에서 입채를 하는 모양인데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말하자면 동네에서 전몰군경의 유가족 등을 방문하게 될 때에 거기에는 개인의 사비를 낼 수도 없는 형편이므로 예비비만은 불가피의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김 영 완 의원

- 우리는 어느 때나 실천할 수 있는 일을 하여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민반 강화비가 막대한 예산이 되어 있는데 실지 본다면 정례회를 하는 일도 없을 뿐만 아니라 회의록이나 또는 거기에 필요한 선전비 등을 사용한 예가 절대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연도말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너무나 지나친 부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국 대책비에 있어서도 이러한 실례가 있습니다. 시국 대책비를 물었는데도 불구하고 영수증이 없다고 하여 2중으로 납부한 사실이 있사오니 앞으로는 영수증을 발행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또한 요즈음 들어 본 바에 의하면 시청 직원이나 동직원들이 국채 독려차 나가서 다소의 비용 등도 있는 모양입니다. 예비비하고 국민반 강화비만은 다시 조정하여 주십시오.(옳은 말씀이다 하는 이 있음)

◇시정계장 박 구 화

- 긴급한 국가 요청이기 때문에 빨리 실시코자 합니다.
- 일정시대도 애국반이라는 것을 조직하여 가지고 말단의 행정을 강력히 추진했던 일본놈을 보더라도 국민반의 강화가 긴급히 요청됩니다. 실은 이것을 11월부터 실행하여야 할 것인데 추가개정에 의해서 실행하려고 지금까지 못하고 있으므로 지금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 하 동 현

- 시장 이 사람으로서도 시민의 부담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싫어합니다. 앞으로도 될 수 있으면 시민의 부담을 적게 할 계획입니다. 요즈음 각 동의

실정을 보면 양면과지 한 장에도 40원내지 50원 정도를 가져야 종이 한 장 살 형편이기에 동회에 어느 때나 요청되고, 수용비 정도는 지불하여 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리고 세율이 인하되었음에 정맥 6승(升-되) 가격으로는 인상하여 주어야 할 것이며, 또한 국민반 강화비에 있어서는 상부로부터 통첩이 와 잇는 모양이므로 통과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복 주 의원

- 지금 각 항목의 예산을 본다면 상당한 액인데 12월도 지나고 앞으로 만 3개월이면 연도가 끝나는데 인쇄비가 150만이라는 숫자는 너무나 많은 숫자라고 생각되며, 동으로 보내는 연료비 등은 이 자리에서 통과시키는 것보다도 이 다음 기회로 미루고 내무분과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재청합니다.

◇진 복 춘 의원

- 물론 이복주 의원 말씀도 옳습니다. 그러나 지금 동회에서는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을 것이니 이 자리에서 토의해 가지고 통과하기를 개의합니다.

◇ 간사 조 운 용

- 이복주 의원 말씀 잘 알겠습니다.
- 작년의 동정세가 5할밖에 수입되지 않았으므로 지금 이 예산은 1년분을 계산한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외상으로 잤다 쓴 것을 지금까지 못 갚은 현실이므로 1년간을 통하여 보아 주십시오. 그리고 시국 대책비는 경찰서하고 토의할 것입니다.

◇이 복 주 의원

- 물론 현 동실정으로 보아서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 그러나 지금 동정세가 5할밖에 수입 못되었다 함은 어떠한 이유입니까?

◇간사 조 운 용

- 과거의 일을 깨끗이 청산하고 동정에 대하여 강력히 나가고자 합니다.
-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동정의 구성을 혁신하려고 합니다.

◇이 복 주 의원

- 동정세는 일정한데 이번에 많이 인상하여 부과하여도 좋습니까?

◇총무과장 조 운 용

- 그러나 백미 6승 가격의 인상 인하에 의해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복 주 의원

- 원칙적으로 100%가 수입되어야 할 것인데 50%의 수입을 보게 된 이유는 어떠한 이유입니까?

◇총무과장 조 운 용

- 호별세가 60%가 징수되었기에 동정세는 50%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복 주 의원

- 이것은 결국 시민의 담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까?

◇김 채 용 의원

- 방금 총무과장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앞으로 3개월 밖에 남지 않았는데 결국 이러한 예산을 세운 것은 우리로서는 사후 승인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통과시키려면 적어도 며칠을 앞두고 사전에 연구 검토할 시간을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주면서 통과하여 달라 하니 나로서는 이해하기 곤란합니다. 그러므로 제반 잡비 등을 더욱 검토하기 위하여, 또한 앞으로 3개월 밖에 남지 않은 기간에 이러한 예산이 필요할 것인가를 시간을 두고 연구하기 위하여 내무분과위원회에 회부하여 가지고 내무분과위원회로 하여금 검토하게 한 후에 본 의회에 상정하여 통과하도록 할 것을 재청합니다.

◇의장 유 정 두

- 동의안의 성립도 내무분과 위원회에 회부할 것인가 가부를 묻겠습니다.

- 재석의원 18명중 가 17명, 기권 1로써 내무분과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가결하였습니다.

◇정 응 표 의원

- 어제 신문 보도를 보니까 요즈음 외국으로부터 비료 등이 부산에 7,200톤, 인천에 8,400톤, 여수에 7,400톤이라는 비료가 들어온 모양인데 우리 목포항에는 한 개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현실이므로 목포항에 발전이 있겠습니까?

- 앞으로는 시장님의 중앙 출장계에 같이 참가하여 주십시오.

- 또 하나는 이번에 운크라 원조 기구에서 각 항구 잔교 시설과 복구를 위하여 각 항구를 순회중 목포에도 왔으나 불행히도 해사국에만 들르고 목포 시청에는 안온모양입니다. 목포의 잔교를 수리하려면 178억 6천만원이라는 돈이 필요한 모양이므로 이런 점을 특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남 진 의원

- 시장님께 말씀 한마디 묻겠습니다.

- 요즈음 판자집 철거에 있어서 거시적으로 단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두가에는 또 새로운 판자집이 2동이나 신축을 하였는데 여기에 대하여서 시로서 허가한 사실이 있습니까?

◇시장 하 동 현

- 시 당국으로서는 절대로 허가한 일이 없습니다.

※ 오후 1시 45분에 비밀회의를 시작하였음

◆ 참석의원:18명

유정두, 이소규, 이복주, 명남철, 김남진, 진복춘, 임일남, 김경현, 김팔용, 이문길, 정응표, 박찬규, 김자홍, 오세일, 김영완, 김삼성, 김경희, 김채용 의원

◆ 불참의원:3명

문택호, 김길환, 이재홍

◆ 참석한 자치단체의 직원

하동현 시장, 조운용 총무과장, 박구화 시정계장, 양희경 공보계장

◇의장 유 정 두

- 회의록 서명 의원에 김남진, 이문길의원을 지명

◆ 폐회선언

의장 유 정 두

(오후 1시 45분)

◆ 폐 회 식 : 절차 생략